

예 산 총 칙

2023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191,325,779	5,739,773
일반회계		186,615,351	5,598,461
특별회계		4,710,428	141,313
	기타특별회계	4,710,428	141,313
	의료급여기금	169,753	5,093
	주거환경개선사업	41,925	1,258
	주차장	4,431,248	132,937
	지하수관리	39,502	1,185
	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28,000	84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974,272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